

3.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9년 10월 25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31일
- 상정일자 :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년 11월 21일), 원안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금년 9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채권 발행 관련 변경사항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조례안 제4조는 공채의 발행 및 등록 업무 수행기관을 「공사채 등록법」상 “등록기관”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으로 변경하고, 공채의 등록방법 및 절차의 기준을 「공사채등록법」에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상기 조례안을 제외한 기타 모든 규정들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곽영구)

○ 조례안 개정의 목적은

- ▶ 「공사채 등록법」이 폐지되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공채 발행업무의 주체와 방법을 현행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 안 제4조에서는 현행 법률의 폐지 및 제정에 맞추어 “ 「공사채 등록법」 제3조”를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제14조”로, “등록기관”을 “전자등록기관³⁾”으로 변경하였음.

3) 전자등록기관 : 전자증권제도 중심 운영기관으로서 법적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권리행사 대행 등 전자증권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
⇒ 현행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전자증권법 부칙 규정)

2016년 3월 정부는 실물증권 발행비용의 절감, 실물증권의 보관·관리에 따른 위험요소 제거, 조세회피 및 자금세탁 등의 음성적 거래 차단과 발행·유통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 기여 등을 목적으로, 전자증권제도⁴⁾를 도입하고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율을 규정한 「전자증권법」을 제정하였고, 3년 6개월 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9월 16일 시행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채(=지방채) 역시 「전자증권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주식등”에 포함되어, 현행 조례를 현행 법률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 ▶ 그 밖에 조례 전반에 걸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또는 일본식 용어와 문장구조를 정비하였음.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전자증권제도 시행('19. 9.16.)에 따라 변경되는 지방채 발행 업무의 주체와 방법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며, 업무 소관부서에서는 달라진 업무 처리방법 등에 따라 향후 지방채 발행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전자증권제도(Electronic Securities System) :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

참고 1

[별표 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제5조관련) - 지역개발공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p>1. 자동차 신규등록</p> <p>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p> <p>(1) 1,000cc 이상 2,000cc 미만</p> <p>(2) 2,000cc 이상</p> <p>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p> <p>(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p> <p>(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라. 사업용 승용자동차</p> <p>(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마. 사업용 승합자동차</p> <p>(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p> <p>(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사.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p> <p>(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p> <p>(2) 중형(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p> <p>(3) 대형(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p> <p>아. 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p>	<p>취득세 과표의 4/100</p> <p>" 5/100</p> <p>취득세 과표의 3/100</p> <p>취득세 과표의 3/100</p> <p>취득세 과표의 2/100</p> <p>취득세 과표의 1/100</p> <p>취득세 과표의 1/100</p> <p>취득세 과표의 4/100</p> <p>취득세 과표의 4/100</p> <p>취득세 과표의 5/100</p> <p>취득세 과표의 2/100</p>
<p>2. 자동차 이전등록</p> <p>(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p> <p>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p> <p>(1) 1,000cc 이상 1,600cc 미만</p> <p>(2) 1,600cc 이상</p>	<p>취득세 과표의 3/100</p> <p>" 4/100</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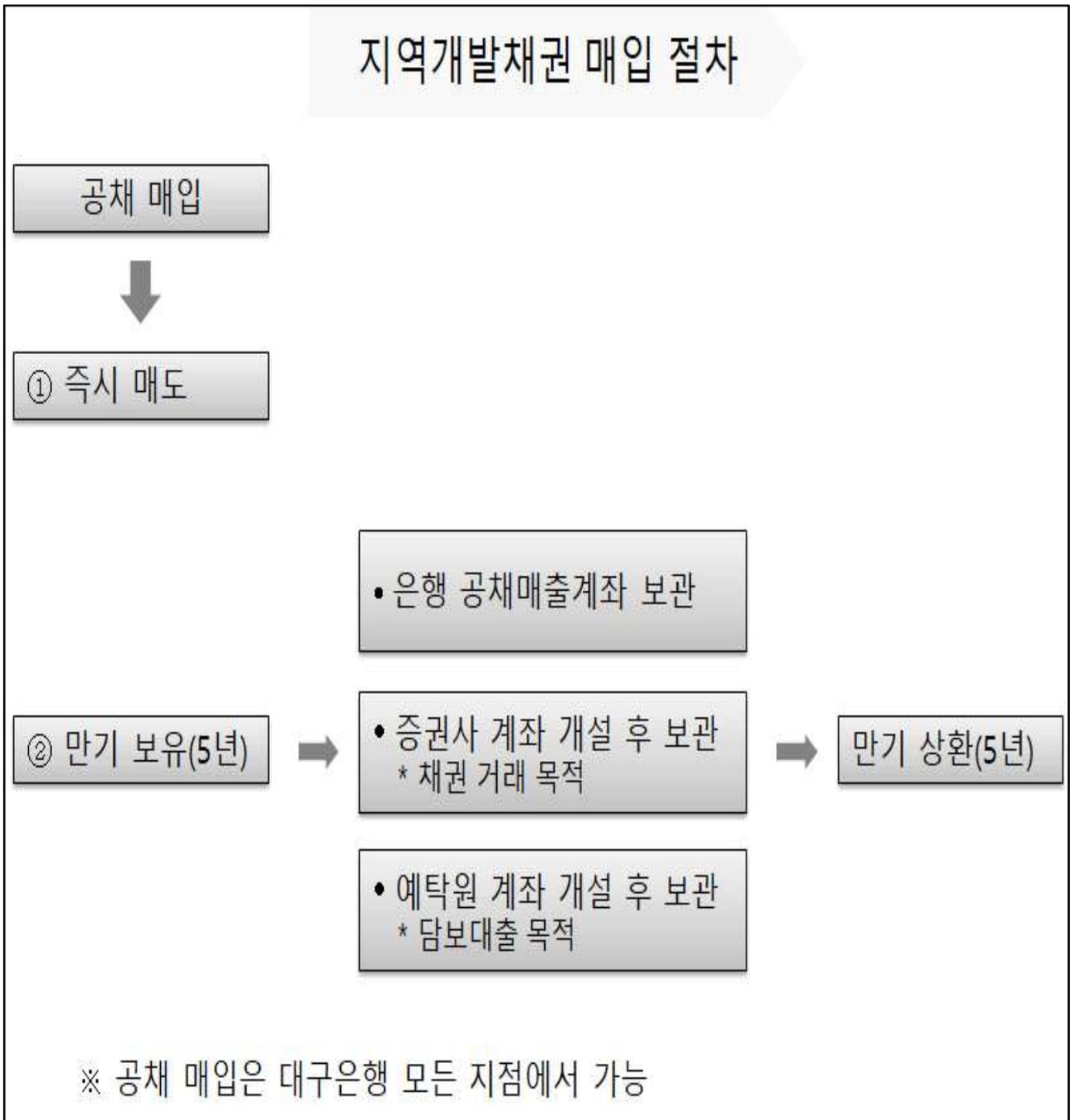
<p>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다. 비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라. 사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마. 사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바. 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미만의 경형은 제외)</p> <p>사. 비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자동차</p> <p>(1) 소형(길이 4.7미터, 너비 1.7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p> <p>(2) 중형(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다만,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p> <p>(3) 대형(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p> <p>아. 사업용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기자동차</p>	<p>취득세 과표의 1.5/100</p> <p>취득세 과표의 1.5/100</p> <p>취득세 과표의 1/100</p> <p>취득세 과표의 0.5/100</p> <p>취득세 과표의 0.5/100</p> <p>취득세 과표의 3/100</p> <p>취득세 과표의 4/100</p> <p>취득세 과표의 4/100</p> <p>취득세 과표의 1/100</p>
<p>3. 기타 허가 및 신고</p> <p>가. 도로, 하천, 구거부지 점용허가</p> <p>나. 토지형질 변경 허가</p> <p>(1) 농지(전, 답)</p> <p>(2) 산, 임야, 잡종지 등 기타 지목</p> <p>다. 토석·사력의 채취허가(「하천법」)</p> <p>라. 골프장 등록</p>	<p>점용료 부과액의 5/100</p> <p>m²당 1,500원</p> <p>m²당 3,000원</p> <p>점용료의 5/100</p> <p>m²당 60원</p>
<p>4. 각종 계약체결 (자치단체 전액출자 법인의 계약체결 포함)</p> <p>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p> <p>나.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p> <p>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0천원 이하의 계약은 제외한다.</p>	<p>대금청구액의 2.5/100</p> <p>대금청구액의 1.5/100</p>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 별표 1 에서 규정한 것 외에 조례 제5조제3항에 의거 연도의 잔여기간동안 매출 하게 되는 지역개발공채의 경우, 그 매입대상 및 금액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고 2

지역개발채권 매입절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등록기관으로 간주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 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맞추어 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전자등록기관은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하므로, 현재로서는 관련 업무를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간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수정안 요지

- 없 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